

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검찰**  
PROSECUTION SERVICE

## 서울남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범기

전화 02-3219-4323 / 팩스 02-3219-4474

## 보도자료

2019. 7. 3.(수)

자료문의: 금융조사제1, 2부

전화: 02-3219-2430, 2442

팩스: 02-3219-2399, 2585

주책임자: 부장검사 오현철, 김형록

### 제 목 '중국 투자자본의 국내 연예기획사 인수'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및 유상증자 참여 유인을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 사건 수사결과

- 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(부장검사 오현철)는 코스닥에 상장된 연예기획사 ㄱ社를 무자본 인수하는 것임에도 “중국 투자자본이 ㄱ社를 인수한다”는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기업사냥꾼 2명을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,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  - 이들은 인수대금 112억 원을 저축은행 대출 등으로 조달하였음에도 “중국 투자회사가 ㄱ社를 인수함으로써 ㄱ社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”는 허위 보도 및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(1,905원→3,300원)하여 17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
- ②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(부장검사 김형록)는 코스피에 상장된 피혁제조·판매업체 ㄴ社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여 前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, 회사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  - 이들은 ㄴ社가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자,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하고, 주가를 신주발행예정가(500원)보다 높게 형성시켜 투자자들의 증자 참여를 유인할 목적으로,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현재가를 신주발행예정가 이상으로 상승(435원→617원)시켜 유상증자 납입금 등 12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

# 1

## ㄱ社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[금융조사제1부]

### 1] 피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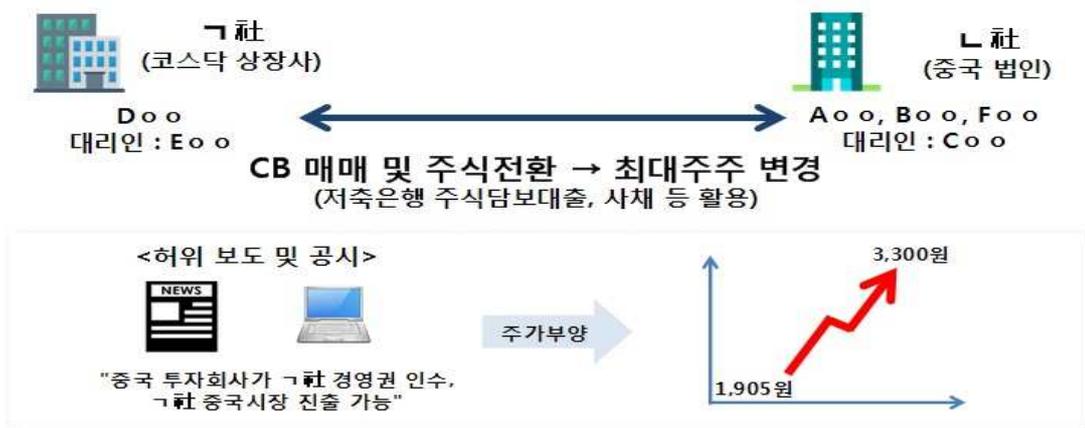
- A○○ [48세, 구속, ㄱ社1) 대표이사]
- B○○ [49세, 구속, ㄱ社 前 사내이사]
- C○○ [49세, 불구속, 자칭 ㄴ社 매수대리인]
- D○○ [50세, 불구속, ㄱ社 매도인] 외 2명

※ 피고인별 처분내용은 [별첨1] 참조

### 2] 공소사실의 요지

- E○○, F○○(2014. 12. 중국으로 밀항)과 공모하여 2015. 9.경 사실은 A○○, B○○, F○○가 국내 차입금을 이용하여 D○○로부터 ㄱ社를 112억 원에 인수하는 것임에도, 마치 중국 투자회사인 ‘ㄴ社’가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공시를 하여 ㄱ社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(1,905→3,300원)시킴으로써 17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(사기적 부정거래)]

### 3] 범행 개요



1) 1991. 1. 코스닥에 상장된 무선통신 솔루션 업체(와이파이망 설계·구축 등)였으나, 2015. 3. 연예기획사로 탈바꿈하여 ‘○○○를 부탁해’, ‘피고O’, ‘○○의 숲’ 등 TV 인기 프로그램을 외주제작(2017년 매출액 256억 원)

#### 4 수사 경과

- 2018. 9. 4. 금융위원회의 고발장 접수
- 2018. 11. ~ ㄱ社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2019. 4. 3. A○○ 구속 기소
  - ※ A○○은 본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5주간의 추적 끝에 검거함
- 2019. 5. 24. B○○ 구속 기소
- 2019. 7. 3. C○○, D○○ 불구속 기소, E○○ 기소중지, F○○ 내사중지
  - ※ C○○은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밀항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구속 기소됨
  - ※ E○○은 본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개시되자 타이완으로 도주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함
  - ※ F○○은 본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상태에서의 가담 사실이 확인되어 내사중지 처분함(본건 외 기소중지 27건, 참고인중지 8건 있음)

#### 5 수사 결과

##### 가. 양도인의 조력을 받은 무자본 기업인수 사례 적발

- 피고인들은 본건 이전에도 무자본 기업인수에 가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음<sup>2)</sup>
  - A○○, B○○, F○○은 저축은행 대출 40억 원, 사채업자 등 차입 62억 원으로 ㄱ社의 지분 16.15%를 112억 원에 무자본 인수하였고, C○○은 매수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인수대금 지급을 집행하였음
  - D○○은 A○○ 등에게 ㄱ社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이들이 해당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잔금지급기일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입고시켜주는 등 A○○ 등의 국내 차입금 조달을 도와주었고, E○○은 매도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저축은행 대출 과정 등에 조력하였음

2) ▲ A○○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고, ▲ C○○은 재산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, ▲ F○○은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음

## 나. 중국 투자회사의 국내 상장사 인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 악용

- 2015년은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국내 연예기획사의 중국시장 진출이 큰 호재로 작용하던 때로, 피고인들은 중국 투자회사의 국내 상장사 인수 정보를 주가 부양의 소재로 이용하였음
- 피고인들은 ㄱ社가 중국 투자회사인 ㄴ社에 인수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매니지먼트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적극 홍보하였으나, 실제로는 ㄴ社는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ㄷ社의 중국 자회사일 뿐임에도 피고인들이 상호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

## 다. 소액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 야기

- 피고인들의 허위 보도자료 및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, 이후 A○○은 ㄱ社를 직접 경영하였으나 적자가 계속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매출 과대계상 하는 등의 이유로 2018. 5. 상장폐지되었음

## 2

### ㄷ社 시세조종 사건 [금융조사제2부]

#### 1 피고인

- G○○ [67세, 구속, ㄷ社<sup>3)</sup> 前 대표이사 겸 대주주]
- H○○ [63세, 불구속, ㄷ社 前 부사장]
- I○○ [67세, 불구속, ㄷ社 前 대표이사 겸 사채업자]
- J○○ [66세, 불구속, 공인회계사, ㄷ社 現 부사장] 외 2명

※ 피고인별 처분내용은 [별첨2] 참조

※ H○○, I○○, J○○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, ‘시세조종 가담 정도에 다름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’는 등 사유로 판사 구속영장 기각

3) 1989. 12. 코스피에 상장된 피혁제조·판매업체로 ○○자동차에 자동차시트용 원단을 공급하고 있으며, 2018년 매출은 836억 원, 근로자 수는 244명임

## ② 공소사실의 요지

### 가. 피고인들의 시세조종

- ㄹ社 대표이사 G○○, 부사장 H○○는 2012. 12.경 ㄹ社의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자본 확충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, 그 성공을 위해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계획한 후 ‘주식전문 사채업자’ I○○, 회계사 J○○, 기업컨설팅업체 운영자 K○○, 증권회사 직원 L○○ 등과 공모하여,
  - 2013. 1. 4.경부터 같은 해 2. 14.경까지 본인 또는 제3자 등 18인 명의의 2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 7,637,280주를 매수하고 2,529,13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, 가장·통정매매, 고가매수주문, 시가관여주문, 종가관여주문, 허수매수주문, 물량소진매수주문 등 총 9백여 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(435→617원)시켜 합계 122억 3,300만 원<sup>4)</sup>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

### 나. 피고인 G○○의 회사자금 횡령 등

- 2013. 2.경 본인이 운영하는 ㄴ社의 자금 약 10억 원을 위와 같은 시세조종 범행을 위해 임의 사용 [특정경제범죄법위반(횡령)]
- 2014. 6.경 본인 보유주식 180만 주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감소하였음에도,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[자본시장법위반]

### 다. 피고인 I○○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

- 2014. 2. 21.경부터 같은 해 3. 12.경까지 소위 ‘내부자’로서 ㄹ社의 ‘2013 사업연도 손익구조 악화’라는 미공개중요정보(공시일 : 2014. 3. 14.)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보유하던 회사 주식 총 8,604,544주(총 매도금액 3,934,418,116원, 매도단가 457.2원)를 매도하여 약 22억 원 상당 손실 회피 [자본시장법위반]

4) 유상증자 납입금 12,015,071,000원 + 시세조종을 통한 매매차익 217,905,479원 = 12,232,976,479원

### ③ 수사 결과

- 본건은 회사 경영진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‘조작된 시세에 따른 신주 인수’와 ‘주가조작 이후 주가하락’이라는 사실상 이중적 손해를 가한 사안임

※ GOO은 위 시세조종으로 1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이후에도 자본잠식 상황이 계속 발생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조치 등을 취하여 오다가 2014. 8. 100에게 경영권 양도하였고, 100는 2015. 7. 현재 최대주주(人社)에 경영권 양도

- 회사 경영진들이 주도하는 범행에 회계사, 증권회사 직원, 기업컨설팅업체 운영자 등 전문분야 종사자들과 사채업자 등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안임

-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하고, 회사 경영진들이 직접 주가조작을 주도한 사안을 적발하였으며,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음 

[별첨1]

## 피고인별 처분내용 [금융조사제1부]

순번	피고인 (나이)	신분	공소사실 요지[죄명]	처분
1	A○○ (48세)	ㄱ社 대표이사	<p>·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. 9.경 A○○, B○○, F○○가 국내 차입금을 이용하여 D○○로부터 ㄱ社를 112억 원에 인수하는 것임에도, 마치 중국 투자회사인 'ㄴ社'가 '자기자금'을 이용하여 ㄱ社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공시를 하여 ㄱ社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(1,905원→3,300원)시킴으로써 17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(사기적 부정거래)]</p>	4. 3. 구속기소
2	B○○ (49세)	ㄱ社 前 사내이사		5. 24. 구속기소
3	C○○ (49세)	ㄴ社 매수대리인		7. 3. 불구속기소
4	D○○ (50세)	ㄱ社 매도인		7. 3. 불구속기소
5	E○○ (42세)	D○○ 매도대리인		7. 3. 기소중지
6	F○○ (49세)	ㄱ社 前 실질사주		7. 3. 내사중지

[별첨2]

피고인별 처분내용 [금융조사제2부]

순번	피고인 (나이)	신분	공소사실 요지[죄명]	처분
1	G○○ (67세)	ㄹ社 前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	<p>△ 피고인들은 공모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12. 12.경 ㄹ社의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자본 확충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, 그 성공을 위해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고, 2013. 1. 4.경부터 2013. 2. 14.경까지 본인 또는 제3자 등 18인 명의의 2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 7,637,280주를 매수하고 2,529,13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, 가장·통정매매, 고가매수주문, 시가관여주문, 종가관여주문, 허수매수주문, 물량소진매수주문 등 총 9백여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435원에서 617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합계 122억 3,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 <b>[자본시장법위반(시세조종)]</b></li> </ul> <p>△ 피고인 G○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13. 2. 본인이 운영하는 ㄴ社의 자금 10억 원을 위와 같은 시세조종 범행을 위해 임의 사용 <b>[특정경제범죄위반(횡령)]</b></li> <li>· 2014. 6.경 본인 보유 주식 180만 주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음에도,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함 <b>[자본시장법위반(보고의무위반)]</b></li> </ul> <p>△ 피고인 I○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14. 2. 21.경부터 2014. 3. 12.경까지 소위 '내부자'로서 ㄹ社의 '2013사업연도 손익구조 악화'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보유하던 회사 주식 총 8,604,544주를 매도하여 22억 원 상당 손실 회피 <b>[자본시장법위반(미공개중요정보이용)]</b></li> </ul>	6. 14. 구속기소
2	H○○ (63세)	ㄹ社 前 부사장		6. 14. 불구속기소
3	I○○ (67세)	ㄹ社 前 대표이사 겸 사채업자		6. 14. 불구속기소
4	J○○ (66세)	공인회계사, ㄹ社 부사장		6. 14. 불구속기소
5	K○○ (52세)	기업컨설팅업체 운영		6. 14. 불구속기소
6	L○○ (49세)	ㄹ투자증권 차장		6. 14. 불구속기소